

서울특별시 120서비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

의안 번호	1319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16년 8월 12일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시민중심 맞춤형 행정 종합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정전문상담기관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시민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시민중심의 소통행정을 위한 각종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재단법인 120서비스재단을 설립하고,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재단의 사업, 정관 기재사항, 임원 및 이사회, 운영자문단, 직원 임면 등에 관한 사항 명시(안 제4조부터 제10조)
- 나. 기본재산의 조성, 기금, 출연금, 수익사업, 운영재원, 사업연도, 사업계획서 및 결산서 제출, 사업의 위탁 등에 관한 사항 명시(안 제11조부터 제18조)
- 다. 검사·보고 및 공무원 파견 등에 관한 사항 명시(안 제19조부터 제20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, 민법

나. 예산조치: 협의 완료

다. 협의사항

(1) 법무담당관(규제심사) : 신설·강화규제 없음

(2) 민관협력담당관(위원회) : 해당사항 없음

(3) 예산담당관(비용추계) : 협의 완료

(4) 감사담당관(부패영향평가) : 평가대상 아님

(5) 여성정책담당관(성별영향분석평가) : 원안동의

(6) 갈등조정담당관(공공갈등진단) : 원안동의

라. 기타

(1) 입법예고 (2016. 7. 14. ~ 8. 3.) 결과 : 붙임

(2) 비용추계 등 자료 : 붙임

※ 작성자 : 시민소통기획관 시민봉사담당관 120운영팀 이혜진(☎ 2133-6541)

서울특별시 120서비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시민중심 맞춤형 행정 종합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정전문상담기관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시민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시민중심의 소통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120서비스재단을 설립하고,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재단법인 120서비스재단(이하 “재단”이라 한다)의 설립·운영은 「민법」, 「지방자치단체의 출자·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」 등 재단법인의 설립·운영 등에 관한 관계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3조(설립) 재단은 「민법」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.

제4조(재단의 사업)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시정·구정 상담서비스 제공
2. 시민소통 상담 데이터베이스 관리 및 분석
3. 상담 전문인력 확보 및 양성
4. 시민중심 맞춤형 상담서비스 발굴
5. 시정상담 서비스의 효과적 전달방안 연구
6. 시정 특수목적 및 임시 상담서비스 수탁 수행
7. 재단 사업관련 업무시설 관리
8. 상담관련 전산장비 구축·운영 및 관리
9. 서울특별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 산하기관 콜센터 통합운영 및 관리
10. 그 밖에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

제5조(정관)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.

1. 목적

2. 명칭
3. 사무소의 소재지
4. 자산에 관한 사항
5.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
6. 임직원에 관한 사항
7. 이사회에 관한 사항
8.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
9. 예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
10.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
11. 해산에 관한 사항
12. 공고에 관한 사항
13.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

② 재단은 제1항에 따른 정관을 작성하여 미리 서울특별시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과 협의하여야 한다.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제6조(임원) ① 재단은 이사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이사와 1명의 감사를 둔다.

② 이사장 및 감사는 시장이 임면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.

③ 이사장 및 감사를 제외한 임원의 임면과 임기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④ 이사장을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.

제7조(임원의 직무)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며, 그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감사는 재단의 회계 및 사무를 감사하며,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
제8조(이사회) ① 재단의 사업수행에 중요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며,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. 다만, 이사회 구성 시 특정 성(性)이 60%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
②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를 총괄한다.

③ 이사장이 부득이 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정관에서 정한 당연직 이사 기재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④ 이사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9조(운영자문단) 재단의 효율적인 운영과 민원 처리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자문하기 위하여 전문가로 구성된 운영자문단을 둘 수 있다.

제10조(직원)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명한다.

제11조(기본재산의 조성) 재단의 기본재산은 시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.

제12조(기금)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에 기금을 둘 수 있다.

제13조(출연금) 시장은 재단의 설립·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.

제14조(운영재원 등) 재단의 시설·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, 수탁사업수익금, 기금운용과 관련한 이자수익금과 재단의 사업수익금 등으로 한다.

제15조(사업연도) 재단의 사업연도는 시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.

제16조(사업계획서, 결산서 등의 제출) ① 재단은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시의 회계 관계 규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.

③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결산서류를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세입·세출에 관한 예산·결산보고서 및 발생주의·복식부기에 따른 재무회계 결산서

2.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제1호의 예산·결산보고에 대한 검토의견 및 재무회계 결산에 대한 감사보고서

3. 재단의 운영 및 서비스 등을 평가한 경영평가서

제17조(수익사업)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시장에게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.

제18조(사업의 위탁 및 자료제공) ① 시장은 재단의 사업과 관련된 사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업무를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.

② 재단은 시와 그 산하기관에 재단의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.

③ 제2항에 따라 재단에 제공된 자료는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.

제19조(검사·보고)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재단의 운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 또는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·검사하게 할 수 있다.

제20조(공무원의 파견) 시장은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0조의4에 따라 재단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.

제21조(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폐지) 「서울특별시 120다산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」는 이를 폐지한다.

붙임: 입법예고결과 요약서

입법예고결과 요약서(제5조 관련)		
의견제출자	제 출 의 건	조 치 내 용
<p>희망연대노조 다산콜센터지부 외 11개 단체 (정의당 서울시당, 민중연합당 서울시당, 한국비정규직 노동단체네트워크 소속9개단체연합)</p> <p>총 4건 (내용동일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제1조(목적)에 ‘종합상담서비스’라는 용어가 공공행정, 전문상담과 배치되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변경 요청 ○ 제9조(운영자문단)과 관련된 조항 삭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취지는 동감하나 타 출연기관에서 조례에 규정한 사례가 없음 - 조항 삭제가 불가하다면 ‘재단의 효율적 운영’, ‘민원처리에 관한 사항’ 등의 표현 삭제 ○ 제14조(운영재원 등)에서 ‘위탁사업 수익금 삭제’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재단은 출연금으로 운영되고, 목적은 행정상담 서비스이므로 수익이 발생하지 않음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반영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단순생활정보 등 행정과 무관한 분야는 제외된다는 의미를 부여하기 위하여 ‘행정 종합상담서비스’로 용어 변경 ○ 미반영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재단은 현행 120다산콜센터 업무 외에도 전문상담 및 특화상담, 시민에게 필요한 정책개발·연구기능 강화 등의 새로운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므로, 외부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 설치가능한 임의규정임 - 디지털재단, 디자인재단 등 타 출연기관에서도 조례에 규정함 - 자문사항은 조례에 포괄적으로 ‘재단의 효율적 운영’, ‘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’으로 정하고 재단 설립 이후에 ‘운영자문단 운영규정’(내규) 등을 두어 세부적인 운영기준과 절차 등을 정할 수 있을 것임 ○ 일부반영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, 그 범위는 시정 특수목적 및 임시 상담서비스 위탁 수행, 연구용역 수행 등임 - 운영재원은 단기적으로 출연금으로 구성되겠지만, 장기적으로 재단 역할 확대에 따른 수탁사업수입금, 기금 운용 이자수입, 사업수익금 발생이 예상되어 조례에 명시한 것임 - 다만, 용어에서 오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‘위탁사업수익금’을 ‘수탁사업수입금’으로 용어 변경

입법예고결과 요약서(제5조 관련)

의견제출자	제 출 의 견	조 치 내 용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노동당 서울시당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제3조(재단의 의무) 신설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‘재단은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서비스 제공의 공익성을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하며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의 의무를 준수한다’ 공익성과 고용안정에 대한 의무 명시 ○ 제16조(사업계획서, 결산서 등의 제출)에 ③항 신설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‘①항, ②항의 사항을 시행하는데 있어 시민과 노동자 대표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제도로 운영하여야 한다’ 시민과 노동자 참여 보장 조문 신설 ○ 부칙 제3호(기존 직영화 전환의 합의사항 명시) 신설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재단 전환에 따른 기존 호봉제, 인사 제도 등 노동 조건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노사합의를 통해서 확정·적용한다’고 명시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미반영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재단은 시정전문상담기관으로 「지방자치단체의 출자·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3조(경영의 기본원칙)에 이미 지역주민에 대한 공공복리 증진 의무가 명시되어 있음 - 고용과 관련된 사항은 관계법령과 재단의 정관 및 내규, 노사협의 등으로 정할 사항임 ○ 미반영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서울시민은 「서울특별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」 및 시행규칙에 따라 주민참여가 보장되고 있으므로, 본 조례에 별도로 기재할 사항이 아님 ○ 미반영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재단 전환에 따른 노동 조건, 급여 등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재단의 정관 및 내규를 기준으로 노사협의 등을 통하여 정할 사항임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공기업담당관 (방준흡 주무관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제5조(정관) 제1항제9호 정관기재 사항을 ‘예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’으로 변경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'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' 제8조(정관) 기재사항에 ‘예산과 회계’로 명시됨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반영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기존 ‘회계에 관한 사항’ 관계법령에 따라 ‘예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’으로 변경

입법 예고결과 요약서(제5조 관련)

의견제출자	제 출 의 견	조 치 내 용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우리동네 노동권찾기 (김창수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근로자 이사제 조례 반영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근로자 이사제를 조례에 반영해서 설립과 동시에 근로자 이사 임명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미반영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「서울특별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정이 추진되고 있으므로 본 조례에 별도로 기재할 사항이 아님 ※ 서울특별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정 시, 120서비스재단은 근로자이사제 대상임 (정원 450명)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희망연대노조 케이블방송 비정규직 티브로드지부 (최성근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市 지원 재원 축소 금지 조항 신설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재단 설립이후 지속적으로 시에서 재원 확충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미반영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재단은 시정전문상담기관으로 「지방 자치단체의 출자·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」 및 「지방출자·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」에 따라 재무건정성 강화를 위해 자체수입 확대 노력을 강화하고,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한 예산절감 및 수익 증대 노력 강화할 의무가 있으므로 재원 축소 금지 조항을 명시하는 것은 불가함 - 재원은 사회경제적 제반 상황에 따 라 규모의 변동이 불가피한 경우도 있을 수 있는 점과 재원 축소 금지 조항을 명시하는 것은 특권으로 인식 되어 시민의 반발이 있을 수 있음 ※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수익 사업을 할 수 있으므로 장기적으로 재단 역할 확대에 따른 수탁사업수입금, 기금운용 이자수입, 사업수익금 발생이 예상할 수 있음

입법 예고결과 요약서(제5조 관련)

의견제출자	제 출 의 견	조 치 내 용
<p>희망연대노조 다산콜센터지부 (황다형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제9조(운영자문단)에 노조와 협의 및 노조대표의 참석 명시 ○ 조례안에 직원(상담사)의 복지, 근무 형태 등의 내용 포함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미반영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운영자문단은 재단의 내규에서 기능·구성원 등을 정할 사항으로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참석대상을 명시하는 것은 불필요함 ○ 미반영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재단 직원의 복지, 근무형태 등은 재단 설립 이후, 재단의 정관과 내규(복무규정, 인사규정, 복리후생규정 등)로 정할 사항임
<p>희망연대노조 다산콜센터지부 (심명숙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재단 설립 과정에 노동조합원과 TF를 구성하여 재단 설립 준비 ○ 팀장 선임시 숙련된 상담사에게 인 사승진 기회 보장 ○ 상담사와 논의하여 공공성 강화 및 상담사 교육 강화 ○ 빠르게 재단 전환 추진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미반영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희망연대노조 다산콜센터지부의 요구 사항으로 본 조례에 기재할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

붙임: 비용추계서

서울특별시 120서비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

I. 비용추계 요약

1. 비용발생 요인 : 재단 출연금(기본재산 및 운영비)

- 120서비스재단 사업과 운영에 드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음

▶ 조례안 제11조(기본재산의 조성) 재단의 기본재산은 서울특별시(이하 "시"라 한다)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.
▶ 조례안 제13조(출연금 교부) 시장은 재단의 설립·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.

2. 비용추계의 전제

- 근거 :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
- 산출기준 : 120서비스재단 타당성 조사 학술용역 결과
- 추계기간 : 의안 시행일로부터 5년간('16~'20)

3. 비용추계의 결과

(단위 : 백만원)

구분 \ 연도		설립년도 ('16)	2차년도 ('17)	3차년도 ('18)	4차년도 ('19)	5차년도 ('20)	합계
세입	○						
	○						
	소계(a)						
세출	기본 현금	100	-	-	-	-	100
	재산 현물	7,300					7,300
	○ 연건운영사업비	0	19,610	20,269	21,015	21,760	82,654
	소계(b)	7,400	19,610	20,269	21,015	21,760	90,054
□ 총 비용(a-b)		-7,400	-19,610	-20,269	-21,015	-21,760	-90,054

4. 재원조달 방안

(단위 : 백만원)

구분 \ 연도	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	합계
국비							
시비	지방세수입	100	19,610	20,269	21,015	21,760	82,754
	세외수입						
	지방채 등						
민간							
기타(물품관리전환)		7,300					7,300
합계		7,400	19,610	20,269	21,015	21,760	90,054

5. 덧붙이는 의견

- 120서비스재단은 시·구청 상담업무를 수행하며, 구정 상담업무 부분에 대해 자치구와 협약을 통해 시, 자치구 6:4의 비율로 분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

6. 작성자 : 시민소통기획관 시민봉사담당관 이혜진(02-2133-6541)

II. 비용추계의 상세내역

1. 기본재산 : 1년 기본운영경비 기준
2. 연간운영·사업비 : 인건비, 운영비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		2016년	2017년	2018년	2019년	2020년	합 계	
서울시 출연금	기본재산	현금	100					90,054	
		현물	7,300						
	운영예산		0	19,610	20,269	21,015	21,760		
계			7,400	0	,0	0	0	7,400	
재단 예산	수 입		7,400	19,610	20,269	21,015	21,760	90,054	
	지 출			-19,610	-20,269	-21,015	-21,760	-82,654	
	운영비	계	소계	0	-19,610	-20,269	-21,015	-21,760	-82,654
		인건비	지출	0	-16,594	-17,200	-17,824	-18,467	-70,085
		일반운영비	지출	0	-3,016	-3,069	-3,191	-3,293	-12,569